

의안번호	제 294 호
의결년월일	1995. 7. 31. (제 35 회)

의결 사항	원안 가결
----------	----------



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년월일	1995. 7. 21.

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(안)

1. 제안이유

- 당항포국민관광지의 확장 및 관광객 증가로 소장직위의 격상과 시설치가 필요하여 관계규정 보완 코저함.

2. 주요골자

-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현재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격상시키고 관리계를 신설

3. 본 문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(안)

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1항중 소장은 "지방행정주사"를 "지방행정사무관"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"제5조내지 제6조"를 "제6조내지 제7조"로 한다.

제5조(계) ① 당항포관리사업소에 관리계를 둔다.

②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를 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조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설치) (생략)	제1조(설치) (현행과 같음)
제2조(위치) (생략)	제2조(위치) (현행과 같음)
제3조(업무) ①~⑤ (생략)	제3조(업무) (현행과 같음)
제4조(소장) ①사무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<u>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</u> ②(생략) (<u>신설</u>)	제4조(소장) ① ----- 소장은 <u>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
<u>제5조(공무원)</u> (생략)	<u>제6조(공무원)</u> (현행과 같음)
제6조(규칙) (생략)	<u>제7조(규칙)</u> (현행과 같음)